

국제도서관협회연합(IFLA)

목록원칙 국제회의*

—예 비 공식 보고—

[재 철 역]

서 롬

목록원칙 국제회의는 국제도서관협회연합(IFLA)의 주최하에 Council on Library Resources의 보조를 얻어,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회의관에서 1961년 10월 9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었다.

본 회의의 목적은 1959년 7월 런던에서 개최되었던 예비회의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저자·서명의 자모순 목록에 있어서 기입의 선택과 형식을 결정하는 기본원칙에 관한 일치에 도달하기 위하여었다. 이 목적에 비추어, 각국의 도서관협회와 그밖의 다른 관심을 가지는 기관은 그들과 접촉을 할 수 있게 대표를 임명하고 지령하는 목적을 가지는 국내위원회를 구성할 것이 요청되었다. 또한 상당수의 국제기관(조직)이 본회의에 참석키 위하여 초대되었다. 예비회의에서 지적된 주제에 관한 위킹 페이퍼(Working Papers)가 연구와 비평을 받기 위하여 준비되고 배부되었으며, 그 위킹 페이퍼와 접수된 비평을 기초로 하여 <원칙 성명> 초안이 사무국장에 의하여 준비되고 참석자와 그들의 관계당국에 본회의 개회전에 발부되었다.

본회기동안은 이 <원칙 성명> 초안의 토의 및 수정에 주로 바쳐어졌다. 초안의 각조항이 전체 토의되는 동안, 수정안이 여러 대표단에 의하여 제의되었으며 실무위원회(Working group)과 조직위원회의 위원들이 임명되었다. 실무위원회는 전체토의에서 논의된 수정안과 요점을 심사하고 그 조항의 수정문을 정리하여 그것을 나중 회기의 본회의에서 투표에 걸었던 것이다. 최종 <성명>은 이런 과정을 거쳐 마침내 대다수 참석자의 지지를 얻기에 이르렀다. 이 <성명>과 일반결의를 도맡은 전체회의에도 본회의 동안 여러 특별분과위원회(Special group)가 회합하여 보고를 작성한 바 있다. 동보고는 본회의의 전체보고와 함께 후일 발행될 것이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원칙 성명>의 본문과 그밖의 다른 결의와 대표단과 특별분과위원회의 명단과 투표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결의사항

결의 I

본회는 별기 투표 결과에 따라 다음의

* 이 보고는 목록원칙 국제회의 사무국장 A. H. Chaplin에 의해 발행되었다.

<원칙 성명>을 승인한다.

각국의 공식대표와 각국 위원회는

(1) 이 성명 본문의 취지를 각기 자기나라의 도서관원, 출판자, 서적업자, 그밖의 관계 당사자에 알 수 있는 한 널리 주지시킨다.

(2) (a) 각기 자기나라의 목록원칙이 이 회의에서 일치를 본 원칙과 방법에 일치하도록 가까운 장래에 제정하거나 또는 개정하여 그것이 실시되도록 활동을 일으키고; (b) 또 이 원칙이 국가서지의 편찬에 있어서도 고려되도록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

국제단체의 각공식대표는 이 <원칙 성명> 본문의 취지를 각국 회원에게 주지시키도록 한다.

국제회의 사무국은 이번 출석하지 않았던 모든 나라에나 국제단체에 대해서 목록작업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리라고 생각되는 곳에서는 이 <성명> 본문을 전달토록 한다.

원 칙 성 명

이 성명은 목록원칙 국제회의(파리, 1961년 10월)에서 채택된 것임.

1. 성명의 범위

여기서 말하는 원칙은 오로지 표목과 기입어—즉 여러 기입의 순서를 결정하는 주요소—의 선택과 형식을 규정한 것이다. 저자명하에 기입을 만들고, 이들이 부적당 또는 불충분할 경우에는 서명(표제)기입을 하여 이들을 한 자모순으로 배열하는 인쇄된 도서(간본)¹의 목록을 전체로 한다. 이 원칙은 특히 여러 분야의 내용을 가진 일반 대도서관의 목록을 고려에 넣고 성문된 것이지만 그밖의 도서관목록에도, 또한 도서관목록 이외의 자

모순 도서 리스트 작성에 있어서도, 이들 목록과 리스트의 목적에 응하여 요구되는 개별(고침)을 가하여 준용될 것이 권고되고 있다.

2. 목록의 기능

목록은 아래와 같은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효과적인 용구(Instrument) 이어야 한다.

2.1 그 도서관이 어떤 특정한 도서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이 경우 특정한 도서라 함은

(a) 저자와 서명에 의하여

(b) 저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는 서명만으로

(c) 저자명과 서명이 그 도서의 식별에 부적당하거나 불충분할 경우에는 서명에 대용될 만한 적당한 말로 특징지워진다.

2.2 그 도서관에는

(a) 특정 저자의 저작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b) 특정 저작의 어떠한 판이 있나?

3. 목록의 구성

이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목록은 아래와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3.1 목록되는 각도서에 대하여 최소한 기입을 만들고,

3.2 필요에 따라 한 도서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입을 만든다. 그것은 이용자와 관습을 고려하고, 또 도서 자체의 성격상 필요해서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

3.2-1 저자가 둘 이상의 이름 또는 이름의 형식으로 알려져 있을 경우

3.2-2 저자의 이름은 판명하였으나, 그 도서의 표제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3.2-5 그 도서의 저자로 이설(異說)이 있어 여러 개인에 속해 있을 경우

3.2-4 그 도서가 여러 다른 서명으로 알려져 있는 저작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4. 기입의 종류

기입은 기본기입, 부출기입, 및 참조의 3종을 들 수 있다.

4.1 기본기입——각도서에 대해 만드는 한 기입, 완전기입으로서, 그 도서의 식별상 필요한 모든 특징을 표시한다.

부출기입——기본기입을 기초로한 추가 기입으로 다른 표목하에 그의 기본기입에 주어진 정보를 되풀이 한다.

참조——이용자에게 그 목록중의 다른 곳을 안내하는 기능을 갖는다.

5. 여러 기입의 사용

목록의 두기능(2.1과 2.2참조)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일을 한다.

5.1 각도서에 대하여 그 도서안에 기재된 그대로의 저자명, 또는 서명 표목하의 기입

5.2 그 저자명 또는 서명에 여러 가지의 형이 있을 경우의 각도서에 대하여는 통일표목(Uniform heading)²으로 한 기입을 작성한다. 통일표목은 저자명의 한 형식; 서명이 둘 이상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특정서명을 말하고, 저자명 또는 서명이 모두 그 도서의 식별상 부적당한 경우에는 적당한, 대용이 될만한 통일표목을 만들어도 좋다. 그밖에

5.3 적당한 부출기입과 참조 양자를, 또는 그 중의 한가지를 만든다.

6. 각기 다른종류의 기입의 기능

6.1 저작의 기본기입은 저자명으로 기입되는 경우 보통 통일표목하에 만든다.

서명으로 기입 되는 저작의 경우는, 그 도서안에 인쇄되어 있는 서명 그대로 기본기입을 잡아 통일서명으로 부출기입을 만들어도 좋고, 또는 통일서명으로 기본기입을 잡아 다른 서명으로 부출기입 또는 참조를 만들어 줘도 좋다. 다만 유명한 저작, 특히 전통서명(Conventional title)으로 알려진 저작의 목록의 경우에는 통일서명으로 잡는 후자를 권고한다. (11.3참조)³

6.2 같은 저자의 다른 이름, 또는 다른 이름형에 대한 기입을 만드는 경우는 보통 참조 형식을 취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부출기입을 사용하여도 좋다.⁴

6.3 같은 저자에 대한 다른 서명으로 기입이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보통 부출기입의 형식을 취한다. 그러나 한 표목으로, 여러 장의 부출이 필요한 것을 한 장의 참조로 대치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참조 형식을 취하여도 좋다.⁵

6.4 부출기입(또는 참조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경우에는 참조)은 공저자, 협력자등의 이름하에, 또 서명이 그 도서를 식별(Identification)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저자가 기본기입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서명하에 만든다.

7. 통일표목의 선택

통일표목은 목록되는 저작의 여러판에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즉 사용되는 이름(또는 이름의 형식) 또는 서명이 보통 된다. 또한 인정되어 있는 권위서를 참고로 하여 통일표목을 결정한다.

7.1 몇개 국어로 출판되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어의 판에 기초한 표목을 우선적으로 잡는다. 다만 그 원어가 목록중에 사용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사용되는 언어의 관을 참고로 하여 표목을 잡아도 좋다.

8. 단일 개인 저자

8.1 단일 개인 저자에 의한 저작임이 확인된 저작의 간판에 대한 기본기입은 그 저자의 이름하에 만든다.

저자의 이름이 표제지에 쓰여져 있지 않은 판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명하에 부출기입 또는 참조를 만들어 준다.

8.2 통일표목은 그 저자의 저작 각판⁶에 있어서 가장 빈번히 식별되어서 사용되는 이름, 그 중에서도 가장 완전한 형을 말한다. 예외로는,

8.2-1 그 저자에 관한 전기라든지, 역사적 문헌적 도서중에서, 또는 그 사람의 저작활동 이외의 공적 활동등에서 다른 이름 또는 이름의 형식이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는 그것을 통일표목으로 삼는다.

9. 단체저자와의 기입

9.1 아래와 같은 경우는 단체명하에 기본기입을 만든다. (여기서 단체라 함은 단체명 또는 집합명으로 알려져 있는 공공시설(Institution), 조직체(Organized body) 또는 개인의 집합(Assembly of persons)을 총칭한다.

9.1-1 그 저작이 본질적으로, 그단체의 총체적 사상 또는 활동의 표현인⁷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총괄자 또는 봉사자로서의 누군가가 개인명으로 싸인 하였다 할지라도 단체명하에 기본기입을 만든다.

9.1-2 만약 서명(표제) 또는 표제지의 표현이 그 저작의 성격에 비추어, 단체가 그 저작의 내용에 책임을 갖고 있음이 명확할 경우⁸

9.2 그밖의 경우에 단체가 저자의 기능에 대하여 보조적인 기능(예를 들면 천집자의 기능)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단체명하에 부출기입을 만든다.

9.3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기본기입은 단체명, 서명, 또는 개인저자명 중 아무 것을 잡아도 좋다. 다만 어느 경우라도 기본기입을 잡지 않은 것으로부터 부출기입을 만든다.

9.4 단체명하에 기입되는 저작의 통일 표목은 그 단체의 출판물중에서 가장 빈번히 식별되어 사용하는 이름을 말한다. 예외로는,

9.4-1 만약 여러 형의 이름이 다 같이 빈번히 출판물에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정식 이름을 통일표목으로 삼는다.

9.4-2 수개 국어로 정식 이름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 목록 이용자의 요구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언어의 이름으로 잡는다.

9.4-3 단체가 일반으로 전통적 이름으로 알려져 있을 경우에는, 이전통적 이름(그 목록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의 전통적 이름)이 통일표목이 된다.

9.4-4 나라와 [도, 시, 군, 면, 리등과 같이] 영토를 갖는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통일표목은 그 목록 이용자의 요구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언어로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역의 이름형이어야 한다.

9.4-5 단체가 각기 시대에 따라 개칭된 그것이 근소한 변경뿐일 경우에는, 그 출판물이 나온 시대의 정식 이름을 표목으로 잡는다. 그밖의 이름은 참조로서 연결시켜준다.⁹

9.4-6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단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이름 이외에 다시 식별 수단을 더 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9.5 혼법, 법률과 조약, 그리고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어떤 저작에 대해서는, 적당한 국명 또는 지역명 하에 기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의 성격을 표현하는 형식적 또는 전통적 서명을 사용한다. 필요에 따라 실제의 서명으로부터 부출기입을 만든다.

9.6 어느 상부단체에 종속되어 있는 단체의 저작은 그 종속기관명 하에 기입을 한다. 예외로는,

9.6-1 만약 그 종속기관명 자체가 종속 관계 또는 종속기능을 포함하고 있거나 또는 그 종속기관을 식별하는데 불충분 할 경우에는, 표목은 상부기관명으로 잡고 종속기관명은 부표목으로 한다.

9.6-2 만약 종속기관이 정부의 행정, 사법, 입법기관일 경우에는, 표목은 국명 또는 지역명으로 잡고 기관의 병칭은 부표목으로 한다.

10. 복수 저자의 경우

둘 이상의 저자¹⁰가 한 저작의 제작에 있어서 관여 분담하였을 경우 :

10.1 그 도서안에 한 저작가 주저자 (Principal author)로 표시되어 있고 다른 이는 종속적 또는 보조적 구실을 하 고 있을 경우에는, 주저자명 하에 기본 기입을 만든다.

10.2 주저자라는 것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0.2-1 저자가 2명내지 3명일 경우, 표 제지상 맨먼저 쓰여진 저자명 하에 기본기입을 만들고 다른 저자명 하에 부

출기 입을 만든다.

10.2-2 저자가 4명이상의 경우에는 서명하에 기본기입을 하고, 최초에 기재된 저자명 하에는 [반드시], 그밖의 저자명 하에는 필요에 따라 부출기입을 만든다.

10.3 합집(Collections)¹¹

여러 다른 저자의 독립된 저작(작품) 또는 저작의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합집의 기본기입은

10.3-1 그것이 종합서명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 합집의 서명;

10.3-2 종합서명을 갖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합집안의 최초 저작의 저자명 또는 서명.

10.3-3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편찬자명을 알 경우에는 편찬자명으로 부출기입을 만든다. (여기서 편찬자라함은 그 합집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의 원천(Sources)을 찾아 모은 책임자를 말한다.)

10.3-4 예외 : 만약 편찬자명이 표제지상에 현저히 나타나 보일 경우에는 편찬자명을 기본기입으로 잡고, 서명을 부출기입으로 잡아도 좋다.

10.4 만약 한 저작의 계속적으로 간행되는 각부분이 각기 다른 저자의 것일 경우에는 기본기입은 최초 부분의 저자명 하에 만든다.

11. 서명으로 기입되는 저작

11.1 서명으로 기본기입되는 저작은 :

11.1-1 저자 미상의 것

11.1-2 4명이상의 저작으로 주저자가 없는 것

11.1-3 여러 다른 저자의 저작이나 저작의 부분을 합집한 것으로 종합서명을 가지고 출판된 것.

11. 1-4 저자명에 의함, 보다 오히려 서명에 의해, 주로 또는 전통적으로 알려진 저작(축차간행물과 잡지등도 이 예에 속한다.)
- 11.2 서명으로 부출기입 또는 참조를 만드는 것은:
- 11.2-1 무저자명도서로 저자가 판명된 것.
- 11.2-2 저자명하에 기본기입을 만드는 저작으로, 그 서명도 식별상 중요한 수단의 하나가 되는 것.
- 11.2-3 단체명하에 기본기입을 만드는 것으로, 단체명을 포함하지 않은 뚜렷한(Distinctive) 서명을 가지고 있는 것.
- 11.2-4 예외적으로 편찬자하에 기본기입을 만드는 합집.
- 11.3 서명으로 기입된 저작의 경우에 통일표목(기본기입이든 부출기입이든 6, 1 참조)은 원문의 서명 또는 그 저작¹²의 제판(Editions)중 가장 빈번히 쓰이는 서명을 말한다. 다만 예외로,
- 11.3-1 만약 그 저작이 전통서명에 의해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을 경우에는, 그 전통서명이 통일표목이 된다.
- 11.4 계속적 부분 또는 책(권)을 가진 저작[즉 一部多冊의 저작]으로 서명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른 서명을 지니고 있지 않는 한, 최초의 부분 또는 책(권)의 서명을 통일표목으로 삼는다.
- 11.5 축차간행물이 개제 속간(改題續刊)되어 나을 경우에는, 각기 그 서명하에 기본기입을 만든다. 각기 본기입에는 적어도 바로 앞과 뒤의 서명을 주기하여둔다. 이러한 발행물에 대해서는 한 선정된 서명하에 부출기입을 만드는 것이 좋다.¹³ 그러나 만약 서명의 변경이 경미할 경우에는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형을 전체 축차간행물에 대한 통일표목으로 선택할 수 있다.
- 11.6 다수 국간의 조약, 회의, 그밖의 어떤 종류의 출판물중, 특징 없는(Non-distinctive) 서명으로 발행되는 것은 통일된 전통적 표목하에 기입을 하고 그 저작의 형식을 반영(표현)시킬 수 있다.¹⁴
12. 개인명의 기입어
- 개인저자의 이름(성)이 수개어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기입어의 선택은 될 수 있는 한 그저자가 국적을 가진 나라의 관습에 따라 결정한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저자가 통상 사용하는 언어의 관습에 따라 결정한다.

결의 Ⅱ

본회의는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 (1) 이번 임명된 조직위원회는 다음번 IFLA의 연차회의까지 존속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 (a) 본회의에서 채택된 본문의, 편집상 필요한 정정을 행한다.
- (b) 이들 본문을 전체 공식대표, 방청자, 각국위원회, 그밖의 참가단체, 그리고 전문지에 배포한다.
- (c) 본회의의 보고의 편집과 발행
- (d) 본회의의 모든 결의의 실행을 확실히 한다.
- (e) 본회의는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수립한 방침의 작업 속행(續行)을 확실히 한다.
- (f) 본회의 준비 단계 및 회의 간에 모인 제문서자료의 보관과 이용

(g) 목록작업분야에서의 앞으로 연구할 주제의 리스트를 IFLA사무당국에 제출한다.

(2) IFLA사무당국은 본회의의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방법과 목록작업분야에서 앞으로 연구할 주제를 고려하여, 본회에서 승인한 계획(Project)을 실시해 나가고 장래 계획(Programme)에 요구되는 재원(財源)을 구하는 일을 한다.

결의 Ⅲ

본회의는 장래 국제활동을 위하여, 본회의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각국의 국내위원회가 금후에도 존속하여 조직위원회와 협력하는 일을 계속해 줄 것을 바란다.

결의 Ⅳ

실시 계획

A. 본회의는 다음 계획(Projects)이 조직위원회의 지령에 따라 실시될 것을 제안한다.

(1) 각국에 있어서 승인된 자국인 개인명 기입 방식의 실제에 대한 설명을 가급적 빨리 공표할 것.

(2) 아래와 같은 리스트를 작성하고 공간(公刊)할 것.

(a) 나라, 기타 영토와 연결된 기관[도, 시, 군, 면, 리등]의 목록기입에 대한 승인된 형식, 즉 이들 나라와 기타 영토 자체가 정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에 세계 몇개의 주요 국어로 번역명을 부친 리스트.

(b) 각국의 무저자명고전에 대한 통일 서명에 다른나라말로 승인된 번역명을 부친 리스트.

(c) 저작의 형식(성격)을 반영시켜주는 전통표목으로 기입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출판물의 법주를 한정한 리스트.

B. 본회의는, 예를 들면 희랍, 라틴 고전작가의 이름에 대한 통일표목의 리스트의 작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상에 비추어, 우선 시험삼아 제한된 소수의 것에 대해서라도 편찬을 개시할 것을 제안한다.

결의 Ⅴ

본회의는, 같은 언어를 2개국 이상에서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호간 통일된 방식(Practice)을 취하기 위하여 그 언어로 개인명의 기입형식에 관한 의논을 서로 행할 것을 권고한다.

결의 Ⅵ

본회의는 IFLA에 대하여 다른 국제조직 중 관심을 같이하는 단체와 협력하여 전자공학적 방법과 기계적 방법을 특히 일반 대도서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것이 목록규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할 것을 권고 한다.

결의 Ⅶ

본회의는, 이 <원칙 성명>에다 앞으로 국제적 합의가 얻어질 만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더 보족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 이 있길 바란다.

결의 Ⅷ

본회의는 국제기준국(ISO)의 대표가 표시한 협조정신에 감사를 드리고 금후에도 IFLA와 ISO간의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특히 서지적 참조나 번자문제에 관해 협

력해 나갈 것을 회망한다.

결의 IX

본회의가 목록원칙에 관한 광범한 일치를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한 바 있다면 그것은 Council on Library Resources가 IFLA에 준 원조에 험입은 바 지대함을 특히 기록해 두고자 한다. 이 원조가 있으므로서 이회의의 준비를 호조전하에 진행시키고 또 다수 국가와 국제단체에서 책임자를 초대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본회의는 Council on Library Resources의 후한 도움에 대하여 감사를 드린다.

주 기

1. 이 각서에서 “도서”란 말은 유사한 성격을 가진 다른 도서관자료도 포함한다.

2. “통일표목”(Uniform heading)이란 용어는 회의에 제출되었던 원안에서는 “표준표목”(Standard heading)이라 사용되었었는데, 후자의 용어가 무엇인가 표준심사 단체가 승인하여 비로소 사용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줌으로 반대 의견이 나와서 통일표목(Uniform term)란 표현으로 바꾼 것이다.

3. 서명하에 기입되는 저작의 취급에서의 원칙은 특정 저자표목하의 기입을 배열하는 경우에 충용할 수 있다.

4. 예를 들면 특정한 저작의 그룹이 어느 특정한 명칭과 결합되어 있을 경우.

5.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여러 가지 다른 서명이 여러 판에 있어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

6. 7-1항에 관계 한다.

7. 예를 들면 공식보고, 규칙과 규정,

선언, 프로램그, 그리고 집합활동의 결과의 기록류.

8. 예를 들면 Bulletin, Transaction 등과 같이 일반적 용어가 단체명의 앞 또는 뒤에 붙어 이루어진 서명을 가지고 그 단체의 활동면을 포함하는 축차간행물.

9. 연속해 나온 여러 다른이름이 같은 단체를 표시함이 확실할 경우에는 모든 기입을 최신 이름하에 함께 모으고 다른 이름으로부터 참조를 내어 줌도 허용된 방법이다.

10. 이 조항에서 “저자”란 말은 단체명으로 기입된 단체저자도 포함한다.(9항참조)

11. 본회의의 상당수의 대표가 10.3을 승인치 아니하고, 다음의 별법에 찬의를 표하였다.

10.3 여러 다른 저자의 각기 독립된 저작(작품) 또는 저작의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합집의 기본기입은

10.3-1 합집이 종합서명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10.3-1-1 편찬자명이 표제지상에 있을 경우에는 편찬자명을 기본기입으로 잡는다.(여기서 편찬자라 함은 그 합집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의 쏘스(Sources)를 찾아 모은 책임자를 말한다.

10.3-1-2 편찬자명이 표제지상에 없을 경우에는 서명을 기본기입으로 잡는다.

10.3-2 합집이 종합서명을 갖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합집의 최초 저작의 저자명 또는 서명.

10.3-3 편찬자명이 기본기입으로 선택지 않은 경우에는, (만약 편찬자

평을 알 경우에는) 편찬자명하에, 만약 기본기입이 편찬자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서명하에 부출기입을 언제나 만들어 준다.

12. 7-1 항에 관계한다.

13. 만약 그 축차간행물에 관한 정보를 목록중의 한군데에 전부 모아두는 것이 요망될 때.

14. 만약 이들 출판물에 관한 정보를

목록중한 군데에 전부 모아두는 것이 요망될 경우.

부 록 I

본회의 참가자수는 53개국과 12개 국제단체의 대표와 1959년 런던에서 임명한 조직위원회의 위원, 및 동위원회에서 위촉한 워킹 페이퍼(Working paper)의 집필진 등 105명이었다. 또한 20개국에서 104명의 방청자(옵서버)도 참석하였다.

각 국 대 표

파테 말라	불란서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브라질	일 본
네델란드	서 아프리카	차마이카
노르웨이	세일론	중국(중화민국)
뉴저랜드	스웨덴	체코슬로바키아
덴 막	스위스	칠 리
독일(서독)	스페인	캐나다
쏘베트연방	싱가포르	콜럼비아
레테시아 나사란드연방	아르헨틴	타이랜드
레바논	영 국	터 키
루마니아	오스트랄리아	파키스탄
룩셈불그	오스트리아	페 루
멕시코	우루파이	포르투갈
미 국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베트남공화국	이 란	핀란드
베트남인민공화국	이스라엘	한국(대한민국)※
벨기에	이탈리아	헝가리
불가리아	인 도	

※ 한국대표로는 이봉순씨 (한국도서관협회 상무이사,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장) 가 참석하였다.

국 제 단 체

Associaiton of Libraries of Judaica and Hebraica in Europe

Federation of Internationale de Documentation

FAO Library

International Ascociation of Agricultural Librarians and Documentalist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usic Librarie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International Publishers Association

United Nations Library, New York

United Nations Library, Geneva

UNESCO